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각군 참모총장 추가〉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767호, 제2207768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 | 1  |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1  |
|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3  |
| II . 검토의견 .....          | 5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5  |
| 2. 검토의견 .....            | 7  |
| ※ 참고자료 .....             | 10 |



##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김남희 · 정준호 · 김남근 · 김현정  
염태영 · 황운하 · 민병덕 · 박정현 · 황명선 · 김우영  
이용우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 의안번호 : 7767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

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김남희 · 정준호 · 김남근 · 김현정  
염태영 · 황운하 · 민병덕 · 박정현 · 황명선 · 김우영  
이용우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 의안번호 : 7768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II.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lt;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gt;</p> <p>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p> <p>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u>한국은행 총재</u>, 특별감찰관 또는 <u>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u></p> | <p>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p> <p>-----</p> <p>-----</p> <p>-----</p> <p>-----</p> <p>-----</p> <p>-----<u>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국은행 총재</u>-----</p> |



## 2. 검토의견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 실시주체                   | 대상 공직후보자                                                                                                                                                  |                                       |
|------------------------|-----------------------------------------------------------------------------------------------------------------------------------------------------------|---------------------------------------|
| 인사청문<br>특별위원회<br>(23인) | 국회 동의<br>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 국회 선출<br>헌법재판소재판관 3인<br>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
| 소관<br>상임위원회<br>(44인)   | 대통령 임명<br>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 대법원장 지명<br>헌법재판소재판관 3인<br>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

「국군조직법」<sup>1)</sup>에 따라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각군에 참모총장을 두고 있음.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

1)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감독함.

지난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각군 참모총장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각군 참모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해당 직위의 위상·권한과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sup>2)</sup>

참고로, 미국의 경우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각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경우에는 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각 군 참모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sup>3)</sup>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법안심사 당시 국방부는 군 주요직위자(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sup>4)</sup>을 제시하였으나, 각군 참모총장의 경우 군

---

2)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3)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서(2025. 02.)

4) 「국방개혁기본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73513호)」 제14조(합동참모의장 등의 인사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구조상 대상인원이 소수인 점, 인사청문 실시에 따른 군의 정치화 및 청문회 준비 기간 장기화로 인한 지휘 혼선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sup>5)6)</sup>

둘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sup>7)</sup>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두어야 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015 |

5) 2006. 4. 14, 제259회국회 제3차 국방개혁기본법안심사특별소위원회 회의록 中

-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합동참모의장 등의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에 합참의장과 방위사업청장이 포함되는 것은 공감하는데 각 군 총장까지를 여기다가 포함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총장의 대상은 극히 각 군별로 소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휘권에 타격을 주는 청문회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 ○○○○ 위원 아니, 그런데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성격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참모총장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군령을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휘 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6. 4. 26, 제259회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中

- 소위원장 ○○○ 넷째, 군 고위 지휘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에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지휘권 손상의 우려도 있음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군령을 수행하는 합참의장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6) 「국방개혁기본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2006.2.

7)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 도입 시기  | 법적근거                                                                                                                 | 대 상 자                                                                     |
|--------|----------------------------------------------------------------------------------------------------------------------|---------------------------------------------------------------------------|
| 제15대국회 | 「국회법」 개정(2000. 2. 16.)<br>「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 제16대국회 |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br>「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br>※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br>-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
| 제17대국회 | 「국회법」 개정(2005. 7. 28.)<br>「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br>※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br>「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 국무위원(대통령임명)<br>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
|        |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br>※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br>「국회법」 개정(2006. 12. 30.)<br>「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 합동참모의장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b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제18대국회 |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b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
| 제19대국회 |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br>※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 특별감찰관                                                                   |
|        | 「방송법」 개정(2014. 5. 28.)<br>※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 한국방송공사 사장                                                               |
| 제21대국회 |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br>「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br>※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                                                           |